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2024. 09. 0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사이 학생회



1. 개회

- 1) 국민의례
- 2) 정족수 확인
- 3) 서기단장 선출
- 4) 개회 선언

2. 보고안건

- 1) 2025년도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1/1~4/1) 활동 보고
- 2) 2025년도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1/1~4/1) 학생회비 결산안 보고
- 3)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활동 보고
- 4)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학생회비 결산안 보고
- 5)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감사 보고
- 6)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부서 신설 보고
- 7)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국(차)장급 간부 임명 및 집행부원 보고

3. 심의 및 의결안건

- 1)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심의·의결의 건
- 2) 2025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3) 2026년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투표 방식 심의·의결의 건
- 4) 2026년도 사범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선거일 심의·의결의 건

4. 기타안건

5. 폐회선언

2025년도 전남대학교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의사진행 세부 규칙

1. 회의 진행과 관련된 원칙

- ① 회의 공개의 원칙
 - 회의 공개, 방청 공개, 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 ② 정족수의 원칙
 - 각급 회의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의에 명시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출석 인원의 2/3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 ③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 ④ 발언 자유의 원칙
 -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제지 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가결(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킬 수 있다.
- ⑤ 다수결의 원칙
- ⑥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 ⑦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안(표결심의의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표결 재심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용어

- ① 회의: 개회에서 폐회까지 기간을 말한다.
- ② 개회: 회의 처음 시간을 말한다.
- ③ 폐회: 회의의 끝을 말한다.
- ④ 휴회: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 ⑤ 정회: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정회 선포 시, 회의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⑥ 독회: 의안심의의 제절차를 말한다.

3. 정족수

선거 미실시로 인한 대의원의 부재 등 사고로 인한 부재는 제적 인원에서 제외한다.

4. 회의록 통과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 정정,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 ② 발언 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설명을 한다.
- ③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1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 ④ 발언 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 20분 이내
 - ▶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5분 이내
 - ▶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3분 이내
 - ▶ 단,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 대의원의 1/2의 찬성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발언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질의 답변: 3인 이내

- 찬반 토론: 3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중앙위원 1/2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수를 늘릴 수 있다.

- ⑥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기회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 ⑦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조정한다.

6. 의안의 종류

- ① 원안: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체계를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운영위원회의 안을 지칭한다.
- ② 수정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자는 먼저 이를 표결에 붙인다.
- ③ 수정동의안: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자가 원안제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 ④ 이견안: 원안과는 달리 의안 상정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A안, B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7. 발언의 종류

- ① 질문발언: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
- ② 의사진행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하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 진행자나 대의원의 발언
- ③ 규칙발언: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 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 ④ 찬반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
- ⑤ 신상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내용을 말하는 발언

8.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순서

- ① 안건상정
- ②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 ③ 질의 및 답변
- ④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 ⑤ 토론 종결(과반수 이상 찬성, 찬반토론 없이 종결시는 2/3)
- ⑥ 개의안(수정안)제출여부 확인 및 제안설명(개의안의 작성은 운영위의 검토로 확정)
→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 ⑦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⑧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 ⑨ 토론 종결
- ⑩ 개의안에 대한 표결
→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 단, 제출된 원안과 다른 안(이견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 안건상정
- ▶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 ▶ 질의 및 답변
- ▶ 상정된 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제안설명
- ▶ 질의 및 답변
- ▶ 상정된 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여부를 운영위와 상정된 다른안의 제출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일개정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표결한다.

- ※ ↔ 단일 수정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단일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다.)
↔ 단일 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단일 수정안에 대한 지지 및 반대발언을 한다.
↔ 단일 수정안일 경우 표결한다. 단일 수정안이 아닐 경우 선택표결한다.)
- ▶ 토론 종결
- ▶ 선택 표결
- ※ 그 밖의 의사진행 세칙은 일반적인 회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범대학 학생회칙

전 문

우리는 자유롭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격체다. 진리·창조·봉사의 창학 이념에 따라 사상, 학문 그리고 진리 탐구라는 기치로 정의를 추구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더욱 나은 미래를 창조할 자질을 갖추어 사회적 실천을 통한 봉사를 지향한다. 미래 교육을 선도할 예비교사로서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 민주시민 사회를 이룩하여 사회 모순의 해결과 사회발전 기여를 위해 노력한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학생자치조직이라는 성격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 모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 간의 상호 교류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 학생문화를 실현한다. 2019년 03월 18일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발의 및 의결로 사범대학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한다.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범대학 모든 회원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자치문화를 꽃피우고 학문탐구와 창조적 비판능력을 신장하여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정의로운 민주사회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사회 모순의 해결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사 과정의 모든 학생으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휴학 및 정학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전반 활동에 관련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④ 본회의 회원은 선출한 대표자를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내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그 밖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 ⑦ 본회의 회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정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전반의 사업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선출한 대표자를 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 6 조 (조직)

본회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범대학 학생총회,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사범대학 집행부, 학과(부) 학생회 그 외 특별 기구를 둔다.

제 7 조 (특별 기구)

- ①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와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 등을 비롯한 업무 진행상 필요한 집행 기관 및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 기구의 활동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 기구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존립기간의 만료 시
 - 2. 목적달성의 불능 시
 - 3. 구성원이 없게 될 시
 - 4. 기타 중대한 결격 사유로 기구를 유지할 수 없을 시
- ④ 해산 절차는 사범대학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 ⑤ 해산기구의 권한 업무 및 제반 시설 등은 업무 인수자가 담당한다.
- ⑥ 해산기구의 권한 및 업무의 인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을 경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사범대학 학생총회

제 8 조 (지위)

사범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이며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 9 조 (구성)

사범대학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 10 조 (의장)

사범대학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부재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 11 조 (권한)

- ① 사범대학 학생총회는 본회 운영의 전반에 중대한 사안을 토의 및 의결한다.
- ② 사범대학 학생총회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탄핵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 12 조 (소집 및 개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총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 2.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3. 회원의 5%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을 경우
 - 4. 긴급을 요할 경우
- ② 사범대학 학생총회 소집은 최소 2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사범대학 학생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사범대학 학생총회는 회원 1/4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제 13 조 (의결)

- ① 사범대학 학생총회는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사범대학 학생총회의 무산, 기타 사유로 의결할 수 없을 시 사범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한다.

제 3 장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제 14 조 (지위)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학생총회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사이의 본회 최고 권력기관이자 의결기관이다. 단,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본회 최고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제 15 조 (구성)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5년 이내에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 직책과

무관하게 5명으로 구성한다.

1. 사범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각 학과(부) 학생회장
3. 각 학과(부) 학년 대표자

제 16 조 (의장 및 부의장)

- ① 의장은 사범대학 학생회장, 부의장은 사범대학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및 회의를 관장한다. 단, 의장 유고 시 부의장이 대행한다.

제 17 조 (업무 및 권한)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학생회칙,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등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집행부의 각 국(부)장 및 각 국(부) 활동을 일괄 인준한다.
- ④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감사위원장,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특별 기구장의 활동을 일괄 인준한다.
- ⑤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학생회비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⑥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⑦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 ⑧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학생총회 미성사 시 최고결정권 위임받는다.
- ⑨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⑩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사범대학 집행부에 대하여 서류 제출 및 사범대학 집행부 각 국(부)장의 출석요구권 및 해임의결권을 가진다.
- ⑪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각 항을 비롯한 안건에 대한 각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로 가지고 와 수렴한 것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다시 각 단위로 내려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 ⑫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기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 18 조 (소집)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재적의 1/10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거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은 최소 2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정족수)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로 권한을 위임한다.

제 20 조 (탄핵 소추 및 해임의결권)

- ①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탄핵 발의는 재적 대의원 15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 ②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사범대학 집행부 각 국(부)장, 특별 기구장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이 있을 경우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해당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임 의결은 재적 대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4 장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제 21 조 (지위)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 22 조 (구성)

- ①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 각 학과(부) 학생회장, 특별 기구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과(부)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수행한다.
- ③ 학과(부) 학생회장단이 공석일 시, 해당 학과(부)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단, 5년 이내의 신설 학과(부)의 경우, 학과(부)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23 조 (의장)

의장은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겸임한다. 단, 유고 시에는 사범대학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 24 조 (임기)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직책 임기와 같다.

제 25 조 (업무 및 권한)

- ①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사업 및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 ②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심의 및 검토한다.
- ③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되지 못할 경우 결정할 수 있다.
- ④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사범대학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⑤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사범대학 집행부의 각 국(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가진다.
- ⑥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안을 결정, 집행한다.
- ⑦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업무 진행상 필요한 집행 기관 및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⑨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무산과 사범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의 경우 제 43 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1.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 ⑩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기타 본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① 정기총회는 매월 3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최소 하루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7 조 (의결)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 28 조 (집행 기관 및 특별 기구)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한 집행 기관 및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시 의장이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를 대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 기관 및 특별 기구는 업무 수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 5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29 조 (학생회장)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학생총회,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사범대학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제 30 조 (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학생회장 유고 시 업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 31 조 (자격 및 선출)

- ① 학생회장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사 과정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부학생회장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사 과정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 ③ 입후보자 중 재적 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32 조 (임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 실시 차기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33 조 (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 34 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학생총회,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사범대학 집행부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하여 이에 책임을 진다.
- ②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③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집행 기관 및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이외에 필요하다고 사후에 인정된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 ⑤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집행부 각 국(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⑥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학생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다.
- ⑦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 행정에 참여하여 질의 및 보고를 할 수 있다.
- ⑧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6 장 사범대학 집행부

제 35 조 (지위)

사범대학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36 조 (구성)

- ① 사범대학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 업무에 필요한 부서로 구성된다.
- ② 사범대학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국(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각 국 차장을 구성할 수 있다.

제 37 조 (임기)

사범대학 집행부의 각 국(부)장 임기는 인준받은 후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 (업무 및 권한)

- ① 사범대학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 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장단의 심의에 의해 부서를 구성한다.
- ② 사범대학 집행부 인원의 증원 불가 시 각 부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 ③ 사범대학 집행부는 사범대학 학생총회,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④ 사범대학 집행부는 집행부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시 요구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 ⑤ 사범대학 집행부의 각 국(부)장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⑥ 사범대학 집행부는 각 항 외의 기타 학생인권신장 및 학생자치문화와 복지 개선 사업을 집행 및 담당한다.

제 38 조 (해산)

사범대학 집행부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탄핵 시 즉시 해소된다.

제 7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39 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사범대학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 40 조 (권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각각 사범대학 집행부와 사범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제 41 조 (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총회,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42 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미선출

2.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탄핵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과 제 45 조(비상대책위원회 위원) 1항에 따라 임명된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43 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 42 조(구성) 1.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2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단,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미선출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호선된 1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직을 수행한다.

⑤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미선출로 인해 해당 연도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⑥ 소집 및 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한다.

⑦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달 동안 공고하고 공고 24시간 후에 해소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자 정보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투표 방식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투표 결과

제 44 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각 학과(부)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 45 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① 비상대책위원은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전원이 겸임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은 각 학과(부)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직의 임기와 같다.

제 8 장 학과(부) 학생회

제 46 조 (지위)

사범대학 내에 있는 학과(부) 학생회는 각 학과(부)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 47 조 (구성)

① 학과(부) 학생회는 학과(부)의 전체 학생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장단의 공석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5년 이내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부) 학생회의 구성은 학과(부) 학생회칙을 따른다.

제 48 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 ① 학과(부)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보장되는 학과(부)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출되며 학과(부)를 대표하여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② 학과(부) 학생회장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전남대학교 확대운영위원회, 전남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언,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학과(부)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5년 이내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49 조 (학과(부) 집행부)

- ① 학과(부) 집행부는 학과(부) 내 전체 활동에 관한 학과(부) 업무 및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 ② 학과(부) 집행부는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기질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 ③ 학과(부) 집행부의 구성 및 임기는 각 학과(부) 학생회칙을 따른다.
- ④ 학과(부) 집행부는 학과(부) 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 50 조 (학과(부) 학년 대표자)

- ① 학과(부)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학년별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학과(부) 학년 대표자는 제 15 조 (구성) 3호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지위가 보장된다.

제 51 조 (재정 및 권한)

학과(부) 집행부의 재정은 학과(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9 장 재 정

제 52 조 (회비)

- ① 본회의 회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②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의 요구 시 통장 및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시 요구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제 53 조 (회비의 혜택)

학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는다.

제 54 조 (회비와 관리)

본회는 학생 활동에 필요한 회비를 편성, 집행하며 회비의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한다.

제 55 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3월 01일부터 익년 02월 말까지로 한다. 단, 매년 선거 이후의 회계 운영은 차기 학생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 ② 예산 편성 및 결산 기간은 1학기과 2학기로 구분하되, 각 학기마다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한다.
- ③ 결산은 매 학기 말에 실시한다

제 56 조 (예산의 편성과 심의)

- ① 예산은 집행부의 사업 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조정, 확정한다.
- ② 예산안이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의 경상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 57 조 (가 예산과 경정예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기간 안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 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예산 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대해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58 조 (예산집행)

- 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

비사용 여부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제 59 조 (결산보고)

- ① 결산보고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 ② 결산 보고서는 사범대학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받는다.

제 60 조 (감사)

사범대학 집행부의 예·결산에 대한 감사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칙에 준한다.

제 10 장 선 거

제 61 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한다.

제 62 조 (선거권)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사 과정의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 63 조 (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 단, 매 학년 종강일 30일 전까지는 실시해야 한다.

제 64 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부)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심의 및 의결 안건에서 자 천 혹은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선출 당시에 4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 ⑤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다.
- ⑥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제 65 조 (보궐선거)

- ①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무산 시
- ② 학생회장의 궐위 시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학생회장 궐위 15일 이내에 부학생회장이 이를 대행하고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제 66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2 조

회칙에 명시된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시행을 위해 선거시행세칙제정위원회는 2019학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선거시행세칙의 효력이 발휘됨과 동시에 본 조항은 자동 삭제된다.

제 3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 ①

2025년도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1/1~4/1) 활동 보고

• 2025년도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1/1~4/1) 활동보고

- 보고자: 비상대책위원장 유민상(수학교육과, 20)

1. 새내기 새로 배움터 (25. 2. 11.)

새내기 새로 배움터 홍보 포스터



새내기 새로 배움터 동아리 공연



사범대학 각 학과(부) 회장단 소개



학내 갈고 담기(5.18 광장)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 ②

2025년도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회(1/1~4/1) 학생회비 결산안 보고

• 2025년도 비상대책위원회(1/1~4/1) 학생회비 결산안

- 보고자: 비상대책위원장 유민상(수학교육과, 20)

항목	책정 예산(원)	집행 여부	해당항목 집행액(원)	내용	잔액(원)
사림체전	200,000	미집행	0		200,000
사범대학 학생회실 비품비	100,000	집행	14,900*3 +300	- 미리캔버스 결제 45,000 (월 14900+수수료 300))	55,000
예비비	1,792,672		0		1,792,672
합계	2,092,672	·	45,000	·	2,047,672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활동 보고

•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활동 보고

- 보고자: 학생회장 황민정(가정교육과, 23), 부학생회장 송하진(윤리교육과, 23)

1. 세월호 추모 행사 (25. 4. 10. ~ 25. 4. 18.)

세월호 참사 추모글 작성

세월호 11주기 추모사업
- 세월호 추모글 작성 -



노란 리본 달기

세월호 11주기 추모사업
- 노란 리본 달기 -



세월호 11주기 추모사업
- 노란 스티커 붙이기 -



[과학교육관]



[교육음합관]

세월호 11주기 추모사업
- 음악교육과 합창 -



노란 스티커 붙이기

음악교육과 합창

2. 지구의 날 X 중간고사 응원사업 (25. 4. 24.)

응원사업 홍보 카드뉴스	응원사업 진행 사진
<p>지구의 날 x 시험기간 응원사업</p> <p>내 시험과, 우리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p> <p>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께 사범대에서 교내 카페 쿠폰을 드립니다!</p> <p>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관소동립자원센터, DG 사범대, 사범대학</p>	<p>현재 교육융합관 사림홀 앞에서 카페 나인틴52 2,000원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p> <p>지구 지키기 서약서 작성으로 지구도 지키고, 바쁜 시험기간 맛있는 커피 드시고 힘내세요! 🍀</p> <p>전남대학교 사범대학</p> <p>1981-2000, 2001-2010, 2011-2020</p>

3. 5.18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25. 5. 14. ~ 25.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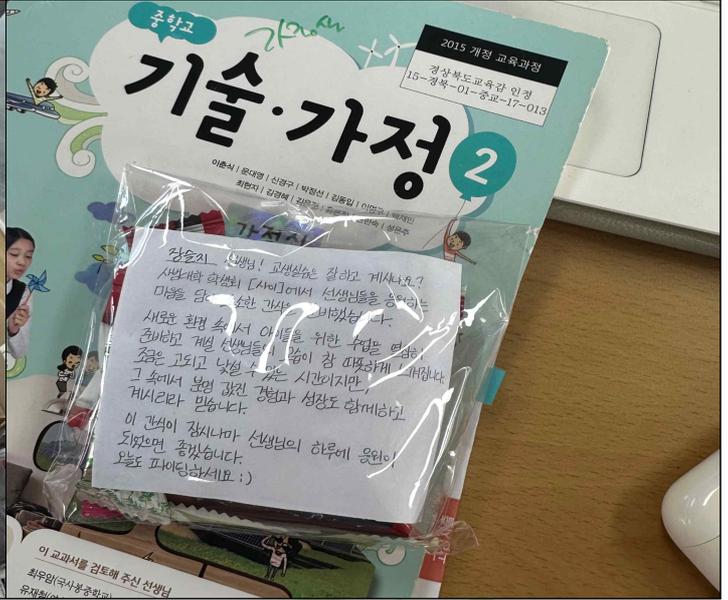
행사 홍보 카드뉴스	행사 진행 사진
<p>5.18 제45주년 기념 행사</p> <p>45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p> <p>국어교육과 편집증 동아리 글 전시</p> <p>장소: 교육융합관 스스로 학습실 앞 화이트보드 기간: 5.14.(수)~5.20.(화)</p> <p>손글씨 챌린지</p> <p>장소: 교육융합관 스스로 학습실 앞 화이트보드 기간: 5.14.(수)~5.20.(화)</p> <p>사범대, 전남대학교</p>	<p>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국어교육과 편집증 동아리 글 전시</p>

4. 교생실습 응원사업 (25. 5. 20.)

물품 포장 사진



물품 사진



5. 사범대학 피크닉 (25. 5. 22.)

홍보 카드뉴스

**2025년도
사범대학
피크닉**

일시	5월 22일 (목) 18:30~20:30	장소	전남대학교 5.18 광장 (봉지)
모집 인원	30명 (+에비 인원 10명)	참가비	약 5,000원
신청방법	5월 13일 18시에 선착순으로 폼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후 취소 및 환불 불가, 당일 늦참 불가 - 참가 인원 및 에비 인원은 개별 문자 예정 		

사범대학 2025년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시영)

피크닉 진행 사진



조끼리 이야기 시간



6. 경영대학X사범대학 연합 야시장 (25. 6. 4.)

행사 진행 사진



여러 부스를
참여하는 학우분들



오후 시간대
연합 야시장 모습

콘텐츠 부스 운영 사진



[사이] X [그루]
컨텐츠팀 부스 운영



[사이] X [그루] 주전부리팀 부스 운영



주전부리 부스 운영 사진



[사이] X [그루]
홍보팀 부스 운영

홍보 부스 운영 사진

7. 기말고사 응원사업 (25. 6. 11.)

행사 홍보 카드뉴스	행사 진행 사진
<p>25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원사업</p> <p>이번 학기 과탐은 나일 거야 야망!</p> <p>날짜 6월 11일 수요일</p> <p>제공 품목 아이스티 망고 추가</p> <p>장소 및 시간 교육융합관 과학교육관 (11시~17시)</p> <p>학생회비 남부자에게만 1인 1개 제공</p> <p>2025년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사어)</p>	

8. 제4회 사범대학 어촌 봉사활동 (25. 6. 25. ~ 25. 6. 28.)

홍보 카드뉴스	봉사활동 사진
<p>제4회 사범대학</p> <p>어촌 봉사활동</p> <p>일시 2025.06.25.(수) ~ 2025.06.28.(토)</p> <p>장소 전라남도 보성군 서당마을</p> <p>2025년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사어)</p>	

9. 2025년도 CNU 대학생 교육포럼 (25. 8. 4. ~ 25. 8. 6.)

행사 홍보 카드뉴스

2025년도
CNU 대학생
교육포럼

대주제: 구성주의 교육의 학교 현장 적용 방안

08.04. **08.06.**
월요일 (14시) 수요일 (18시)

신청 대상 광주-전남권 대학 재학생

신청 기간 7월 16일 ~ 7월 29일 자정까지

행사 내용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교육문제 대안 모색 토크쇼

참가 혜택

- 1 자기개발활동기록부 20점 기록 (신청자에게 한함)
- 2 우수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상 시상
- 3 학생회 활동증명서 발급
- 4 우수팀 3개 팀 상금 수여
- 5 간식 및 식사 제공

분과별 소주제

교육과정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강화 방안

교육평가
오지선다형 평가의 유효성

교육공학
교실 속 디지털 도구를 통한 구성주의 수업 설계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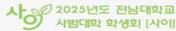
사범대학 홈페이지 > 학생활동

> 학생회 공지 > 네이버폼

문의처

인스타그램 @CNU_SAL_

카카오톡 채널 @전남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



포럼 일정 소개 사진



포럼 의의

- 전남대학교의 대학생이 전공을 막론하고 자발적으로 한데 모여 공통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대학 내 공론장이 활성화되었다.
- 예비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그들 스스로 이룬다.
- 단과대학 학생회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포럼(사업)의 공적 가치를 국립대학육성사업들 통해 검증받았다.



우수팀 세미나 진행 사진



연사 강연 사진

10. 제73회 학위수여식 포토월 설치 사업 (25. 8. 19. ~ 25. 9. 1.)

홍보 카드뉴스

**제73회 학위수여식
포토월 안내**

기간: 2025.8.19.(화) ~ 9.1.(월) 18시까지

2025년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사이]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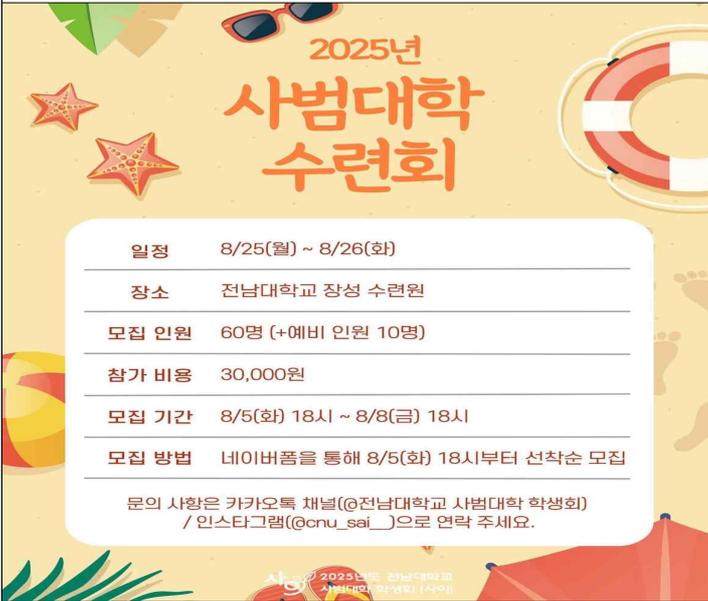
포토월 사진



사이

11. 사범대학 수련회 (25. 8. 25. ~ 25. 8. 26.)

행사 홍보 카드뉴스



2025년
**사범대학
수련회**

일정	8/25(월) ~ 8/26(화)
장소	전남대학교 장성 수련원
모집 인원	60명 (+예비 인원 10명)
참가 비용	30,000원
모집 기간	8/5(화) 18시 ~ 8/8(금) 18시
모집 방법	네이버폼을 통해 8/5(화) 18시부터 선착순 모집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 인스타그램(@cnu_sai_)으로 연락 주세요.

오후 게임 진행 사진 1



오후 게임 진행 사진 2



참여자 단체 사진

12. 개강맞이 사업 (25. 9. 1.)

홍보 카드뉴스

9월 1일 월요일

25년도 2학기 개강맞이 사업

**소시지, 요구르트
먹으러 ㄱㄱ(개강)**



교육융합관 11시~17시
과학교육관 11시~17시
체육교육관 14시~15시

제공 품목: 소시지, 요구르트
유의 사항: 2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만 제공
활동 내용: 포스트잇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학창 시절 순간은?" 작성하고 보드에 붙이기

사업 2025년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사이]

사업 진행 사진



사범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 ④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학생회비 결산안 보고

•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4/2~) 학생회비 결산안

- 보고자: 사이 사범대학 사무국장 인준 예정자 박시현(교육학과, 23)

항목	책정 예산(원)	집행 여부	해당항 목 집행액(원)	내용	잔액(원)
세월호 추모 행사	50,000	집행	32,700	- 전지 23장 18,400 - 노란 리본 스티커 6,000 - 노란 리본 스티커(배송비) 3,300 - 리본 포장 끈 2,000 - 리본 포장 끈(배송비) 3,000	17,300
교생실습 응원 사업	200,000	집행	201,290	- 오예스 미니 74,040 - 목캔디 허브 민트 20,260 - opp 투명 봉투 13,000 - 오트밀 미니바이트 22,120 - 베베토 미니 곰젤리 41,900 - 베베토 미니 곰젤리(배송비) 3,000 - 마이쥬 26,970	- 1,290
기말고사 응원사업	200,000	집행	177,660	- 립톤 아이스티 복숭아맛 분말 47,840 - 종이컵 21,260 - 망고 다이스 57,480 - 망고 다이스(배송비) 3,500 - 이쑤시개 2,990 - 곰곰얼음 32,590 - 국자 2,000 - 다용도 담금용기 10,000	22,340
경영대학X사범대학 연합 야시장	1,000,000	집행	900,000	- 야시장 선정산(그룹통장) 900,000	100,000
개강맞이 사업	100,000	집행	89,690	- 천하장사 오리지널 간식 소시지, 1개 10,730 - 천하장사 오리지널 간식 소시지, 4개 38,420	10,310

				- 푸른초원 요구르트 5개입, 40개 24,930 - 푸른초원 요구르트 5개입, 24개 15,610	
학생회실 비품비	100,000	집행	96,800	- 독서대 33,000 - 피크닉 돛자리 16,500 - 우산 11,900 - 우산 (배송비) 3,000 - 삼각대 19,800 - 삼각대 (배송비) 3,000 학생회실 비품 - 테이블 9,600	3,200
예비비	2,927,672	집행	162,900	- 미리캔버스 4월 14,900 - 카드 수수료 4월 300 - 미리캔버스 5월 14,900 - 카드 수수료 5월 300 - 미리캔버스 6월 14,900 - 카드 수수료 6월 300 - 인증서 수수료 4,400 - 미리캔버스 7월 14,900 - 카드 수수료 7월 300 - 미리캔버스 8월 14,900 - 카드 수수료 8월 300 - 하계 졸업식 현수막 82,500	2,764,772
합계	4,577,672	•	1,661,040	•	2,916,632

※ 특이사항

-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이월받은 금액: 2,047,672원
- 2025년도 1학기 입금 학생회비(2025.05.09.): 2,530,000원
- 학생회비 결산안 잔액 2,916,632원 외에 추가로 결산이자(121원), 연합 야시장 주전부리팀, 홍보팀, 부스 입점비, 이자금액을 포함한 수익(350,692원)이 입금되어 현재 2025년 잔여 학생회비가 3,267,445원으로 나옴.
- 보고한 사업 중 아래 표에 작성되지 않은 사업은 참가비로 집행함.
- 야시장 행사는 경영대학 사무국장의 명의로 만든 연합 야시장 통장 내에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비 90만원을 입금하여 연합 야시장과 관련된 모든 행사 수입 및 지출 등 각종 회계업무를 진행함.

2025년도 상반기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감사 보고

• 2025년도 상반기 사범대학 학생회 감사 보고

- 보고자: 사이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송하진(윤리교육과, 23)

※ 모든 부문 S등급 평가

2025년 상반기 정기감사 등급 결정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피감기구명	사범대학 학생회		감사위원명	김진호 (인)
학생회장 황민정, 부학생회장 송하진, 교육진로국장 오지윤, 기획조정국장 박채원, 대의협력국장 이보은, 복지국장 김다정, 소통국장 차지원, 사무국장 김나연				
구분	번호	항목	점수	
공약 이행 S	1	내세운 공약이 잘 이행되었는가?	S	
	2	공약 이행 증거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는가?	S	
	3	공약 이행 정도를 학우들에게 공개하는가?	S	
사업 진행 S	1	사업계획서를 매 사업마다 작성하며 계획하고 있는가?	S	
	2	사업의 세부 계획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S	
	3	사업 계획에 맞게 사업 집행이 이루어졌는가?	S	
	4	사업 집행에 학우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S	
학생회 집행 S	1	학생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S	
	2	학생회 회의체계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가?	S	
	3	학생회가 학우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S	
	4	회의록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S	
	5	학기별 학생회 운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S	
회계 S	1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하였는가?	S	
	2	수입과 지출이 합치하는가?	S	
	3	사적으로 유용된 지출은 없는가?	S	
	4	근거자료의 유지 여부가 구체적인가?	S	

점수는 S, A, B, C, D, F등급으로 부여.

감사위원회 서술식 기록란

- 학생회 운영, 공약 이행, 사업 집행 및 회계에 관한 근거자료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정기적 회의 실시, 회의록 정리 또한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음.
- 사업 및 공약 이행 결과를 학우들에게 공개한 정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음.

상기와 같이 감사 결과를 통보함

전남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 ⑥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부서 신설 보고

• 2025년도 사이 학생회 부서 신설 내용

- 보고자: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장 황민정(가정교육과, 23)

2024년도 학생회 부서 (5개)	2025년도 학생회 부서 (6개)
교육진로국	교육진로국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
복지국	대외협력국
사무국	복지국
소통국	사무국
	소통국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 ⑦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국(차)장급 간부 임명 및 집행부원 보고

•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국(차)장 명단 (6명)

- 보고자: 사이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송하진(윤리교육과, 23)

국(차)장	소속(학년, 학번)	이름
교육진로국(장)	교육(2, 24)	오지윤
기획조정국(장)	국어(3, 23)	박채원
대외협력국(장)	국어(3, 23)	이보은
복지국(장)	특수(4, 22)	김다정
사무국(장)	교육(3, 23)	박시현
소통국(장)	국어(3, 23)	차지원

•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집행부원 명단 (23명)

부원	소속(학년, 학번)	이름
학생회장	가정(3, 23)	황민정
부학생회장	윤리(3, 23)	송하진
교육진로국(장)	교육(2, 24)	오지윤
기획조정국(장)	국어(3, 23)	박채원
대외협력국(장)	국어(3, 23)	이보은
복지국(장)	특수(4, 22)	김다정
사무국(장)	교육(3, 23)	박시현
소통국(장)	국어(3, 23)	차지원
교육진로국(원)	물리(2, 24)	김인주
교육진로국(원)	특수(1, 25)	박세은
교육진로국(원)	가정(2, 24)	최혜연
기획조정국(원)	지구(1, 25)	서해인
기획조정국(원)	수학(1, 25)	이지훈
대외협력국(원)	윤리(1, 25)	서종호
대외협력국(원)	음악(2, 24)	윤인영
복지국(원)	영어(1, 25)	김수인
복지국(원)	가정(3, 23)	장슬지
복지국(원)	영어(1, 25)	최강
사무국(원)	영어(1, 25)	김나연
사무국(원)	물리(1, 25)	홍서영
소통국(원)	가정(1, 25)	김서연
소통국(원)	교육(2, 24)	이성진
소통국(원)	특수(1, 25)	이은서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심의 및 의결안건 ①

2025년도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심의·의결의 건

• 하반기 사업 계획

- 보고자: 사이 사범대학 학생회장 황민정(가정교육과, 23)

사업명	이행 시기
사향제 (사범대학 축제)	25. 09. 16.
사림체전 (사범대학 체육대회)	25. 09. 26.
사림학교	9월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9월 중
사범대학 굿즈 추가 제작	9월 중
중간고사 응원사업	10월 중
임용 응원사업	11월 중
기말고사 응원사업	12월 중
시험기간 스스로 학습실 24시간 개방	10월 중, 12월 중
타 단과대학/타 대학 협력 사업 추진	12월 중
사범대학 시설 월별 설문조사 및 개선	상시
교육계 시사 문제 카드뉴스 게시	상시
행사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상시
분기별 공약 이행률 공개	상시
행사별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상시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심의 및 의결안건 ②

2025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2025년도 하반기 총 (예상) 예산 : 4,867,445원

- 보고자: 사이 사범대학 사무국장 인준 예정자 박시현(교육학과, 23)

□ 2025년도 사범대학 학생회비 수지 (총예산: 4,867,445원)

명목	금액(원)
2025년도 잔여 학생회비와 결산이자 및 기타 금액	3,267,445
2025년도 2학기 미입금 학생회비 (예정)	1,600,000
합계	4,867,445

※ 2025년도 2학기 학생회비 입금액에 따라 예산안이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회비 사업별 예산안

명목	금액(원)
사향제	2,500,000
사림체전	800,000
중간고사 응원사업	200,000
임용 응원사업	100,000
타 대학 협력사업	100,000
기말고사 응원사업	150,000
사범대학 학생회실 비품비	100,000
예비비	917,445
합계	4,867,445

※ 특이사항

제 9 장 재 정

제 57 조 (가 예산과 경정예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기간 안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 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예산 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대해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발취

- 2025년도 2학기 미입금 학생회비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번 사학대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2학기 학생회비 입금액에 따라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별 예산을 가감할 수 있음. 경정예산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집행할 예정.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심의 및 의결안건 ③

2026년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투표방식 심의 · 의결의 건

- 아래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투표 방식을 의결하고자 함.
- 보고자: 2025년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선우(가정교육과, 23)

제 10장 선거

제 66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발췌

제 5장 선거

제 38 조 [투표방식]

투표방식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며, 오프라인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선거를 허용한다.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발췌

2026년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의 투표방식을 <온라인 선거>로 결정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기를 의결하는 바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심의 및 의결안건 ④

2026년도 사범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선거일 심의·의결의 건

- 아래 선거시행세칙과 학생회칙을 바탕으로 사범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선거일을 의결하고자 함.
- 보고자: 2025년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선우(가정교육과, 23)

제 3 장 선거운동본부

제 21 조 [구성 및 자격]

- ① 선거운동본부는 정 부호, 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은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자장급 이상의 간부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5.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6.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통해 임명 및 선출된 자
- ④ 3항 2~6조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 4 장 선거인과 피선거인

제 28 조 [피선거인]

- 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31조(자격 및 선출) 1항의 조건에 부합한 자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의 선거인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인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단,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자장급 이상의 간부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총무 및 부장급 이상의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4.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및 총학생회 특별기구 위원
 5. 해당 학기 총예비역 학생협의회 간부
 6. 해당 학기 응용교지 편집위원회 간부
 7.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간부
 8.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의 간부
- ③ 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직책 사퇴로 인해 업무상 심각한 자질이 벗어날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④ 재선거의 경우, 낙선자는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⑤ 피선거인은 2항에 명시된 직책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선거

제 37 조 [선거일]

- ① 선거일과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63조(선거 시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학사 정기시험」 일정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일은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대면] 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주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일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다.

③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일 결정 후 1항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결정한다.

1. 선거시행 공고일을 선거일정의 첫 날로 한다.
2. 등록서류 배포기간은 선거시행 공고 후 5일 이내로 한다.
3. 추천인 작업기간은 등록서류 배포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4. 후보자 등록기간은 추천인 작업기간 종료 3일 전부터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학사 정기시험」 및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에 시행하며 선거일 전날 자정에 종료하며, 15일 이내로 한다.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발췌

제 3 장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제 17 조 (업무 및 권한)

⑫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기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발췌

• 2026년도 사범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선거 일정

일정	내용
10. 27. (월)	선거시행공고
10. 27. (월) ~ 10. 30. (목)	후보자 등록서류 배포기간
10. 29. (수)	후보자 및 후보추대위원 사퇴 공고
10. 31. (금) ~ 11. 8. (토)	추천인 작업기간
11. 4. (화) ~ 11. 8. (토)	후보자 등록기간
11. 9. (일) ~ 11. 19. (수)	선거운동기간
11. 17. (월)	투표공고
11. 20. (목)	선거일

2026년도 사범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선거일을 11월 20일로 결정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기를 의결하는 바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기타안건

건의사항 및 기타안건

- 사학대회 건의사항 및 기타안건

